

#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 촉구 건의안

지난 해 12월,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30년 간 지속되었던 불완전한 지방자치제를 개선하고, 집행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.

내년에 시행되는 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충원 등 자치분권 2.0시대로의 변화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또한,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규정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, 자치분권 실현과 주민주권 보장에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.

이는 기존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가 수직적 상하관계였다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정부가 되고 중앙과 협력적,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지방분권시대로의 전환점을 맞이하여, 지방의회가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하루 속히 시행령에 담겨야 할 것입니다.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취지를 구현하고,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.

하나, 지방의회의 독립과 위상 강화라는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가 하나의 독립기관이 될 수 있도록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.

하나, 지방의회 인사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.

하나, 행정안전부는 「지방자치법」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고, 지방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의견을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.

2021. 9. 8.

성동구의회 의원 일동